

##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과 대책

### 이 금 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지난 27일 발표된 탈북자 위장 이중간첩 사건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탈북위장간첩의 입국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탈북자 심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우리정부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는 본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이들이 비보호대상자로 규정될 경우 강제송환 등 심각한 위협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까지 탈북자를 위장한 조선족들을 적발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들은 있었다.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장탈북 및 비보호대상자를 엄격하게 식별해 낼 수 있는 기법이 보다 강화되어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탈북자 증가에 따른 탈북자 보호정착체계의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국내입국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담당관제도(거주지, 신변, 취업)가 운영되고 있으나, 연간 입국자가 소수이던 시기와 달리 신변보호는 700여명의 보안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경찰 1인당 12.6명을 보호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초기에 신변보호담당관이 개별적으로 동행하면서 초기정착과정을 지켜보던 체계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규모증가 뿐만 아니라, 밀착관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탈북자들 스스로 부담스러워하고,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개별신변보호 필요성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이 인권침해로 규정됨에 따라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을 엄격히 관리할 수 없으며,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셋째, 최근 들어 입국 탈북자의 80%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탈북자의 합동심문 및 보호담당에 참여하는 여성 전문 인력이 크게 증가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탈북자 개인들의 인권침해의 소지를 예방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엄격한 심사 및 신변보호 역할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여성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여성문제 틀 안에서 이들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 탈북자 지원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탈북자 모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자활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자활

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 탈북자 지원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탈북자 전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특별한 문제를 가진 존재가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회가 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편견 없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